#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용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9870 발의연월일: 2023. 2. 7.

발 의 자:이 용·최영희·강기윤

엄태영 · 노용호 · 배준영

김희곤 • 정희용 • 이명수

박정하 · 서일준 · 김예지

의원(12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선수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스포츠산업 영업질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, 프로스포츠 선수에 대하여 적용되는 관련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보급하도록 하고 있으나, 감독·코치 등 지도자의 권한과 권익에 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함.

그런데 프로야구, 프로축구, 프로배구 등 각종 프로스포츠단에서 운영진이 감독의 선수단 구성, 훈련 및 경기 운영 등의 권한에 개입하거나, 이와 관련된 갈등으로 감독이 경질되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프로스포츠단 운영 문화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제기됨.

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감독 • 코치의 권한과 권익을 보장하기

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, 감독·코치의 권한을 보장하는 내용의 표준계약서를 보급하여 프로스포츠단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 문화를 조성하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18조 및 제18조의2).

#### 법률 제 호

##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의 제목 중 "선수"를 "선수·감독·코치의"로 하고, 같은 조 제 1항 중 "선수의 권익"을 "선수·감독·코치(이하 "선수등"이라 한다) 의 권한과 권익"으로 한다.

제18조의2제1항 중 "선수의 권익을 보호하고"를 "선수등의 권한과 권익을 보호하고"로, "프로스포츠 관련 표준계약서"를 "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프로스포츠 관련 표준계약서"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. 계약 기간 · 갱신 · 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
- 2. 계약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
- 3. 선수등의 권한과 이를 보장하기 위한 프로스포츠단의 의무에 관한 사항
- 4. 초상권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
- 5. 보수・수당에 관한 사항
- 6.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
- 7. 그 밖에 스포츠산업의 공정한 영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항

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개 정 혅 했 아 제18조(선수 권익 보호 등) ① 문 제18조(선수·감독·코치의 권익 화체육관광부장관은 선수의 권 보호 등) ① ----------<u>선수·감독·코치(</u>이하 익을 보호하고, 스포츠산업의 <u>"선수등"이라</u> 한다)의 권한과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공정한 영업질서의 조성 등 필요한 시 권익-----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 ② (생략) ② (현행과 같음) 제18조의2(표준계약서의 제정ㆍ 제18조의2(표준계약서의 제정ㆍ 보급)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급) ① -------선수등의 권한과 권익을 보호 은 선수의 권익을 보호하고 스 하고-----포츠산업의 공정한 영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프로스포츠 관련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프로 프로스포츠단에 이를 보급하여 스포츠 관련 표준계약서-----야 하다. 1. 계약 기간 · 갱신 · 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2. 계약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<신 설> 3. 선수등의 권한과 이를 보장

	하기 위한 프로스포츠단의 의
	무에 관한 사항
<u> &lt;신 설&gt;</u>	4. 초상권 등의 귀속에 관한 사
	<u>히</u>
<u> &lt;신 설&gt;</u>	5. 보수・수당에 관한 사항
<u>&lt;신 설&gt;</u>	6.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
<u> &lt;신 설&gt;</u>	7. 그 밖에 스포츠산업의 공정
	한 영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하
	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②・③ (생 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